

도시계획시설 (공원)변경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

제출년월일 : 2008. 01.

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의안번호	
------	--

1. 건 명 : 성미산내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

2. 상정사유

시민불편해소에 기여하고, 2020.7.1부터 적용되는 장기미집행시설의 자동실효제도에 대비하고자 미집행시설에 대한 존치·폐지 판단 및 집행계획 등을 포함한 서울시 재정비계획안에 의거 폐지 대상인 성산동 산 11-59일대 도시계획시설(학교)을 성미산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률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마포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함.

3. 현황 및 검토사항

- 위치 : 마포구 성산동 산11-59 일대
- 면적 : 당초 51,301㎡, 변경10,200㎡(중), 총면적 61,501㎡
- 도시관리계획사항 : 자연녹지지역, 제1종일반주거지역, 도시계획시설(학교)
- 검토사항 : 서울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되는 학교시설은 성산근린공원에 편입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기초조사 결과

- 서울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되는 학교시설은 인접에 성미산근린공원이 있으며, 현재 토지이용실태는 성산골프 연습장 및 배드민트 연습장으로 이용하고 있음

5. 환경성검토결과

- 특이사항 없음
 - 공원조성으로 인해 현재 토지이용보다 환경성이 우수함.

6. 재원조달방안

- 총 사업비 : 7,100(백만원)
- 토지매입비 : 5,100백만원료(50만원/㎡×10,200㎡)
- 조 성 비 : 약 2,000백만원(㎡/20만원×10,200㎡)
- 예산확보방안

- 개인소유의 9필지 2,639㎡(보상비13억원)에 대한 보상 요구시 우선기반 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에서 지급하고 한양학원 소유부지는 서울시예산으로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하여 조성

7.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(안) 조서

가. 공원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세분	위치	면적(㎡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계					51,301	증)10,200	61,501		
폐지	-	공원	어린이공원	마포구 성산동 39-18	501	감)501	0	용지지정 ('79.1.12)	
변경	1	공원	근린공원	마포구 성산동 39-18	50,800	증)10,701	61,501	건고 제2151호 ('66.2.7)	

나. 체육시설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세분	위치	면적(㎡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계					21,485	감)21,485	0		
폐지	6	체육시설		마포구 성산동 산11-31	21,485	감)21,485	0	서고 93-45 (93.2.23)	

다. 학교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세분	위치	면적(㎡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계					10,200	증)10,020	20,220		
폐지	10	학교	고등학교	마포구 성산동 산11-1	10,200	감)10,200	0	서고 제50호 ('82.2.3)	
신설	10	학교	초·중·고교	마포구 성산동 산11-31	-	증)20,220	20,220	금회	

8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(안) 도



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(안)도

